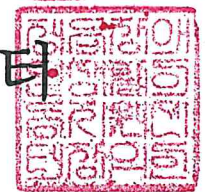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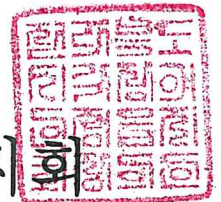


정읍시각장애인 등 생활지원센터 운영(징수)규정

(사)전북시각장애인연합회정읍지회
정읍시각장애인 등 생활지원센터



정읍시각장애인 등 생활지원센터 운영(징수)규정

1. 시내주행은 건당 1,000원으로 규정하며 아래 사항을 같이 적용한다.

(1) 2인 기준 1건으로 한다.

(2) 중증장애인 이용자의 보호자(안내인) 1인은 무료이다.(단, 승하차 장소가 동일한 경우이다.)

(3) 2인 이상일 경우 요금은 1인당 50% 감면으로 한다.(단, 경유지없이 승하차 장소가 동일한 경우이고, 안내인은 인원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4) 시내 주행시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6km를 기준하여 1,000원씩 계산된다.
{출발지는 차고지(정읍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사무실) 기준으로 적용한다.}

(5) 예약 후 대기료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정읍관내 또는 정읍관외는 처음 1시간은 무료이며, 이후 1시간 초과까지만 20분 단위로 1,000원씩 계산된다.

(단, 시내는 대기할 수 없다.)

※ 주·정차 금지구역(구시장 → 명동약국 구간, 정읍역 →정읍우체국 구간)

(6) 경유지마다 1,000원씩 계산된다.

(단, 승차하여 도착지까지 가는 경로 중에서 경유지에서 5분이내 정차 1회 발생의 경우에는 무료이다.)

(7) 심부름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심부름은 본인이 동승하지 않고 요청할 경우
시내 1건당 1,000원 적용한다.

시외 1건당 시외운임료를 동일 적용 한다.

- 무게 20kg가 초과 또는 부피가 한아름 이상 벗어나는 2개 이상은 적재 할 수 없다.

※ 택시, 버스는 집에 대한 적재공간이 따로 있지만, 센터의 승합차량은 적재 공간이 따로 없어 뒷좌석을 밀어야 적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2. 임대차 아닌 시외 주행(장거리)은 택시 요금의 50%로 규정한다.
 (단, 거리에 따라 가산할 수 있다.)

관내·관외 차량이용료							
출발지	도착지 (구간)		주행거리	이용료		비고	
				왕복	편도		
정읍시 각장애 인 등 생활지 원센터 차고지	관외	전주시내	45km	₩20,000	₩15,000		
		군산시내	77km	₩30,000	₩20,000		
		익산시내	60km	₩20,000	₩15,000		
		고창읍내	24km	₩15,000	₩10,000		
		김제시내/부안읍내	40km	₩20,000	₩15,000		
		순창읍내	44km	₩20,000	₩15,000		
	관내	6km까지(시내)				₩1,000	
		6km초과 - 10km까지				₩1,500	
		10km초과 - 20km까지				₩2,000	
		20km초과 - 30km까지				₩3,000	

3. 차량이용료 영수증은 다음과 같이 교부 통지한다.(신규)

- (1) 본인 또는 보호자(대리인)가 요청할 경우 붙임1 양식(영수증)을 교부한다.
- (2) 시설 게시판 및 차량 내 게시로 상시 공고한다.

4. 임대(12인승)

- (1) 도내지역 ₩60,000원(단, 거리에 따라 가산할 수 있다.)
- (2) 인접도외 ₩70,000원(단, 거리에 따라 가산할 수 있다.)
- (3) 왕복 500km이상 지역 ₩100,000원(단, 거리에 따라 가산할 수 있다.)
- (4) 통행료와 유류대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 (5) 임대시 처음 1시간은 무료이며 이후 1시간 초과까지만 20분 단위로 1,000원씩 계산된다.

5. 차량이용자는 다음과 같이 규칙을 준수한다.

- 위험물 또는 악취가 심한 물질은 적재 할 수 없다.
(예 - 휘발유.경유.거름.유리 파손위험류)
- 이용자는 운전기사에게 폭언이나 폭행 및 욕설을 할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6. 다음에 해당하는 이용자에게는 차량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1) 허위사실 유포 및 중상모략한 때
- (2) 습관적으로 차량 예약을 취소한 때, 차량 이용 예약 취소는 예약시간 최소 1시간 전까지 취소 접수해야 하며, 이를 1주일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차량이용을 7일간 제한한다.
- (3) 이용자는 예약한 차량을 센터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대리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차량이용을 일정기간 제한 할 수 있다.
- (4) 차량내 폭언·폭행은 운행 중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차량 이용을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 문제발생 1회 : 2주
 - 동일문제 발생 2회 : 1개월
 - 동일문제 발생 3회 : 2개월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라북도지부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위원회 2004. 9. 13 개정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북지부 정읍지회 이사회 2008. 7. 3 개정

정읍장애인심부름센터 시설운영위원회 2010. 12. 6 개정

정읍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시설운영위원회 2016. 12. 20 개정

정읍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시설운영위원회 2018. 7. 31 개정

정읍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시설운영위원회 2021. 9. 30 개정

정읍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시설운영위원회 2022. 6. 16 개정

정읍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시설운영위원회 2022. 12. 22 개정

운영법인 (사)전북시각장애인연합회정읍지회 운영위원회 2024. 7. 23 개정

[붙임1]

영 수 증

- 발급번호 : 4273차량 - _____
- 이용자 성명 : _____
- 이용 일자 : 20
- 이용료 금액 : ₩ _____

출발지	요금산출기준				이용료금액		
	도착지 또는 구간	주행거리	왕복	편도	해당표시 (√)	건수	금액
정읍 장애 인 생 활 이 동 지 원 센 터	관외	전주시내	45km	₩20,000	₩15,000		
		군산시내	77km	₩30,000	₩20,000		
		익산시내	60km	₩20,000	₩15,000		
		고창읍내	24km	₩15,000	₩10,000		
		김제시내/부안읍내	40km	₩20,000	₩15,000		
		순창읍내	44km	₩20,000	₩15,000		
	관내	6km까지 (시내)	/	/	₩1,000		
		6km초과 - 10km까지	/	/	₩1,500		
		10km초과 - 20km까지	/	/	₩2,000		
		20km초과 - 30km까지	/	/	₩3,000		
경유지	경유지에서 5분이내 정차 1회는 무료이다.						
대기료	1시간 무료, 이후 1시간초과까지만 2분 단위로 1,000원씩 계산.가산한다. (단, 시내는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는 대기할 수 없다. 구시장→명동약국 구간, 정읍역→정읍우체국 구간)						
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내 (₩60,000), 인접도외 (₩70,000), 기타 • 거리에 따라 가산한다. • 통행료와 유류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인 이상일 경우 요금은 1인당 50% 감면으로 한다. (단, 경유지없이 승하차 장소가 동일한 경우이고, 안내인은 인원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합 계							

정읍시각장애인 등 생활지원센터

영 수 증

- 발급번호 : 5259차량 - _____
- 이용자 성명 : _____
- 이용 일자 : 20_____ . _____ . _____
- 이용료 금액 : ₩_____

출발지	요금산출기준				이용료금액			
	도착지 또는 구간	주행거리	왕복	편도	해당표시 (√)	건수	금액	
정읍시각장애인 생활지원센터	관 외	전주시내	45km	₩20,000	₩15,000			
		군산시내	77km	₩30,000	₩20,000			
		익산시내	60km	₩20,000	₩15,000			
		고창읍내	24km	₩15,000	₩10,000			
		김제시내/부안읍내	40km	₩20,000	₩15,000			
		순창읍내	44km	₩20,000	₩15,000			
	관 내	6km까지 (시내)	/	/	₩1,000			
		6km초과 - 10km까지	/	/	₩1,500			
		10km초과 - 20km까지	/	/	₩2,000			
		20km초과 - 30km까지	/	/	₩3,000			
	경유지	경유지에서 5분이내 정차 1회는 무료이다.						
	대기료	1시간 무료, 이후 1시간초과까지만 2분 단위로 1,000원씩 계산.가산한다. (단, 시내는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는 대기할 수 없다. 구시장→명동약국 구간, 정읍역→정읍우체국 구간)						
	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내 (₩60,000), 인접도외 (₩70,000), 기타 • 거리에 따라 가산한다. • 통행료와 유류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인 이상일 경우 요금은 1인당 50% 감면으로 한다. (단, 경유지없이 승하차 장소가 동일한 경우이고, 안내인은 인원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합 계								

정읍시각장애인 등 생활지원센터

영 수 증

- 발급번호 : 법인(임대)차량 - _____
- 이용자 성명 : _____
- 이용 일자 : 20
- 이용료 금액 : ₩ _____

출발지	요금 산출기준				이용료금액			
	도착지 또는 구간	주행거리	왕복	편도	해당표시 (√)	건수	금액	
정읍장애인생활지원센터	관외	전주시내	45km	₩20,000	₩15,000			
		군산시내	77km	₩30,000	₩20,000			
		익산시내	60km	₩20,000	₩15,000			
		고창읍내	24km	₩15,000	₩10,000			
		김제시내/부안읍내	40km	₩20,000	₩15,000			
		순창읍내	44km	₩20,000	₩15,000			
	관내	6km까지 (시내)	/	/	₩1,000			
		6km초과 - 10km까지	/	/	₩1,500			
		10km초과 - 20km까지	/	/	₩2,000			
		20km초과 - 30km까지	/	/	₩3,000			
	경유지	경유지에서 5분이내 정차 1회는 무료이다.						
	대기료	1시간 무료, 이후 1시간초과까지만 2분 단위로 1,000원씩 계산.가산한다. (단, 시내는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는 대기할 수 없다. 구시장→명동약국 구간, 정읍역→정읍우체국 구간)						
	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내 (₩60,000), 인접도외 (₩70,000), 기타 • 거리에 따라 가산한다. • 통행료와 유류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인 이상일 경우 요금은 1인당 50% 감면으로 한다. (단, 경유지없이 승하차 장소가 동일한 경우이고, 안내인은 인원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합 계								

정읍시각장애인 등 생활지원센터